

경기도사회복지정책연대회의
제1차 실무위원 회의

2010. 9. 16.(목)

경기도사회복지정책연대회의

경기도사회복지정책연대회의 운영 규정(안)

제정

제 장 총 칙

제 조 목적 이 규정은 경기도사회복지정책연대회의의 이하 정책연대회의라 한다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조 기능 정책연대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 의결한다

- 경기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회복지정책 개발
- 경기도 사회복지발전을 위한 각종 토론회 개최
- 기타 본 정책연대회의의 발전에 관한 사항

제 조 구성 정책연대회의는 경기도내 사회복지 관련단체장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정책연대회의는 의장 인과 부의장 인으로 구성한다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단 창립총회에서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의장은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이 당연직으로 하기로 함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의장이 선임한다

정책연대회의의 업무를 처리 하기 위하여 의장의 직원 중 인을 간사로 둔다

정책연대회의의 운영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정책연대회의에서 결정한다

제 조 의장 등의 직무 의장은 당해 정책연대회의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의장이 사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는 부의장 중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각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또는 필요시 총무를 두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 조 위원의 대표성 위원은 소속 기관 시설 단체 을 대표하며 전출 사임 등 그 직위를 상실할 경우 그 직위를 승계하는 자가 위원을 승계할 수 있다

제 장 회 의

제 조 회의구분 회의는 정책연대회의 정책연대실무회의로 구분한다

제 조 회의운영 정책연대회의는 당해 회원으로 구성하고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매 격월 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당해 정책 연대회의 재적 회원 분의 이상으로 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각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의장이 회의 개최 일 전에 회원에게 서면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 조 회의 의결사항 정책연대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건의한다

경기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사회복지 정책의 협의 조정에 관한 사항

경기도 사회복지 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 정책 토론회 등에 관한 사항

그밖에 지역사회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의장이 부의한 사항

제 조 위임장 정책연대회의는 위임장을 통해 출석과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위임장의 효력발효는 해당 회원이 별첨 서식에 의해 위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회의개 최 시간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조 정책연대실무회의 정책연대회의의 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정책연대회의 소속 직원으로 구성 한 정책연대실무회의를 둘 수 있다

정책연대실무회의는 정책연대회의 간사가 위원장이 되어 정책연대회의에서 위임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 조 서면결의 의장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으로서 긴급히 처리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결의에 부칠 수 있다

제 조 회의록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 조 제 항 규정에 의해 정책연대회의 및 정책연대실무회의 회의록은 참석자 전원 서명하여야 한다

제 장 회 계

제 조 사업예산 정책연대회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소속회원단체의 회비와 후원금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 조 회계년도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제 장 보 칙

제 조 위임 이 운영규정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정책연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업무 집행 시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의장이 정한다

부 칙

제 조 시행일 이 규정은 경기도사회복지정책연대회의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첨

위 임 장

경기도사회복지정책연대회의 운영규정 제9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 회원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 위임사항 : 성원권, 의결권

■ 수 임 자

성 명 :

소 속 :

직 위 :

20 . . .

위임자 : (인)

경기도사회복지정책연대회의 의장 귀하

제11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
사회복지정책토론회 계획(안)

□ 개 요

